

합천군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

제정 2022. 1. 25. 규정 제6호

개정 2022. 5. 30. 규정 제27호

개정 2022. 12. 27. 규정 제32호

개정 2023. 12. 27. 규정 제4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공단의 조직과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공단의 설립 조례와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직제의 개편)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합천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조(구성원) 공단에 이사장,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.

제5조(이사장)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진다.

제6조(비상임 이사) 공단에 6명의 비상임 이사를 두고, 비상임 이사는 합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경제건설국장, 공기업담당 부장으로 하고, 세무 및 회계 전문가, 공기업 운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제7조(비상임 감사) 공단에 1인의 비상임 감사를 두고, 감사는 군의 재무과장으로 한다.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
제8조(직무대행)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비상임 이사인 합천군의 경제건설국장, 공기업 담당부장, 재무과장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직원) ① 직원의 직군은 일반직군으로 한다.

② 직원의 직급은 3급 내지 7급, 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제10조(기구) ① 공단에 안전감사팀, 경영기획부, 관광사업부, 수질환경부, 생활환경부를 둔다. 단 관광사업부, 수질환경부는 2022. 7. 1.일부터, 생활환경부는 2023. 1. 1.일부터, 안전감사팀은 2024. 1. 1.일부터 기구를 둔다. <개정 2023. 12. 27.>

② 공단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.

제11조(직위) 제10조의 각 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.

제12조(정원) ① 공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.

② 계약직과 비정규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둘 수 있으며,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증원할 수 있다.

제13조(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) 이사장은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,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.

제14조(사무분장) 안전감사팀, 경영기획부, 관광사업부, 수질환경부, 생활환경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23. 12. 27.>

(안전감사팀) <신설 2023. 12. 27.>

1. 감사
2. ESG 경영 업무
3. 윤리·인권경영 업무
4. 경영평가
5. 안전관리 총괄
6. 고객만족도 조사 총괄

(경영기획부)

1. 조직 및 정원관리
2.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
3. 삭제 <2023. 12. 27.>
4. 복무단속 및 지도
5. 삭제 <2023. 12. 27.>
6. 복리후생관리
7. 직인 및 단규관리
8. 공단 재산관리
9. 직원의 교육훈련, 고충처리 및 제안사항
10. 문서 및 도서관리
11. 예산의 편성
12. 지출 및 결산업무
13. 공사·물품·용역에 대한 계약체결
14. 금고관리
15. 수입지출외 현금의 출납 및 보관
16. 장비 및 물품의 관리
17. 전산관리업무
18. 수입업무 총괄
19.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(관광사업부)

1. 합천영상테마파크 관리·운영업무

2. 정양레포츠공원 관리·운영업무
3.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업무
4. 시설물 안내 및 이용홍보
5. 재산임대 및 사용허가
6.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미한 수선업무
7.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(수질환경부)

1. 하수도 기본계획 관리 및 정비계획 이행업무
2.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관리·운영업무
3. 야로 및 율곡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·운영업무
4. 중계펌프장 관리·운영업무
5. 시설물 환경관리 교육 및 관리 운영업무
6.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미한 수선업무
7. 시설물 관리 및 홍보
8.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
(생활환경부)

1. 소각시설 기본계획 관리 및 정비계획 이행업무
2. 소각장 관리·운영업무
3. 합천, 삼가, 야로매립장 관리·운영업무
4. 분뇨처리시설,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·운영업무
5.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·운영업무
6.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
7.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미한 수선업무
8. 시설물 환경관리 교육 및 관리 운영업무
9.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5조(권한과 책임)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.

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6조(부 등) ① 공단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부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.

제17조(사업소 설치 등) ① 이사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원의 범위 안에서 단위 사업장 별로 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업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8조(시행내규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[제27호, 2022. 5. 30.]

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[제32호, 2022.12.27.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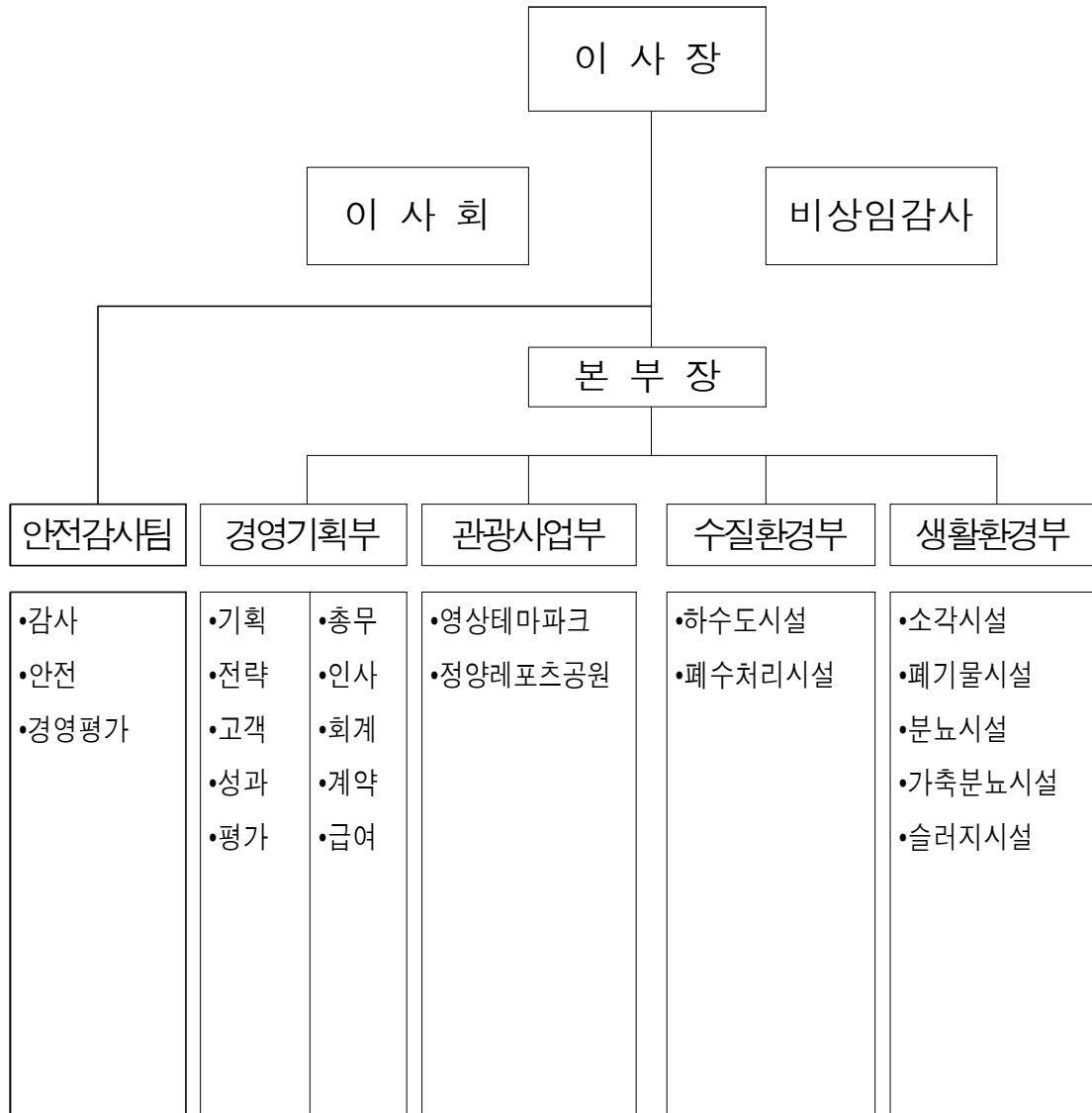
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[제49호, 2023.12.27.]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(제10조 관련) [개정 2022.12.27.] [개정 2023.12.27.]

합천군시설관리공단 기구표



[별표 2](제12조 관련) [개정 2022.5.30.] [개정 2022.12.27.] [개정 2023.12.27.]

정 원 표

구분	부별	인원	임원	군청 파견	안 전 감사팀	경 영 기획부	관 광 사업부	수 질 환경부	생 활 환경부	임 금 피크제
총 계		102	1		3	10	23	34	34	
임 원		1	1							
일 반 직	소계	80			3	6	8	33	30	
	3급	2				1		1		
	4급	7			1	1	1	2	2	
	5급	14			1	1	2	5	5	
	6급	31					2	3	14	12
	7급	26			1	1	2	11	11	
공무직		21				1	15	1	4	
파 건 공무원										

※ 임금피크제 별도정원